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 보

http://www.seo.incheon.kr/

선람	기관의장

제766호 2010. 6. 25.(금)

차 례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27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 2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278호 인천광역시 서구 CCTV 설치·운영 규정 ---------- 3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758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 23

회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10년 6월 25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27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를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원은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으로 한다”를 “위원은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보건소장,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CCTV 설치·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10년 6월 25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278호

인천광역시 서구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설치·운영하는 CCTV 관리 및 운영에 있어 개인화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CCTV”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로써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란 CCTV 영상을 통하여 사람 및 차량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4. “처리”란 CCTV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

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네트워크 카메라”란 영상자료 전송 시 폐쇄적인 유·무선망을 사용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상정보 전송 등의 처리를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수집·법규위반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CCTV로 모조카메라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공익을 최우선적인 판단기준으로 하여 이 규정의 준수 여부를 해당부서의 장이 판단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운영

제4조(CCTV의 설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수집·법규위반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총괄·관리책임 지정) ① 구청장은 CCTV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는 CCTV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 관리책임자는 그 부서의 CCTV 관리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CCTV의 설치·운영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책임자는 CCTV의 설치 및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열람·처리 등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사전의견 수렴) 구청장은 일반 공공시설 또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2. 그 밖에 해당 CCTV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의 실시

제7조(사전협의) 구청장은 개인화상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방침의 공고 등) ① 구청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CCTV 설치·운영 방침을 마련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CCTV 담당부서, 책임자, 연락처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4.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과 부착장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와 방법
6.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장소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9. 그 밖에 구청장이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안내판의 설치) ① 구청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CCTV가 설치된 건물일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전체가 CCTV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책임자・연락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로써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2. CCTV 설치 장소의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없는 경우

제3장 화상정보의 취급

제10조(수집의 제한) ① 구청장은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로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상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특수한 경우로써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이 있을 시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한 문서로 요청 받아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CCTV 설치 및 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
2.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 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보호조치 등) ① 구청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관제센터)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출입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파일을「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송·수신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리권한 차등부여
2. 개인영상정보 접근내역에 대한 로그관리
3.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4. 개인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 절차 수립
5. 백신 프로그램·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

③ 구청장은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전송하는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 IP에 대한 관리 및 접근통제,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거부) ①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열람, 정정·삭제를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위임신청 시 별지 제12호서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 서식을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을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타인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5조(화상정보 보유 및 삭제) CCTV 시스템에 수집된 화상정보는 제8조 방침에 명시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 수집 후 최대 30일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준용)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CCTV의 운영에 대하여 이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개인정보파일보유사전협의서/개인정보파일대장(제7조 관련)

① 기 관 명		② 연 번	
③ 파 일 명			
④ 보 유 목 적			
⑤ 보 유 근 거			
⑥ 수 집 방 법			
⑦ 대상개인범위			
⑧ 대 상 인 원 수		⑨ 보유기간	
⑩ 기 록 항 목 (항 목 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뒷 면)

⑪ 사 용 부 서		
⑫ 열람예정일		
⑬ 열 람 청 구 부서 및 주소		
⑭ 열 람 제 한	항 목	
	사 유	
⑮ 이용·제공기관명		
⑯ 이용·제공근거		
⑰ 이용·제공항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제11조제3항 관련)

① 파일명			
② 이용・제공받는 기관			
③ 이용・제공일자		④ 이용・제공주기	
⑤ 이용・제공형태		⑥ 이용・제공기간	
⑦ 이용・제공목적			
⑧ 이용・제공근거			
⑨ 이용・제공항목			
⑩ 비 고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3호서식]

제한구역 출입대장(제13조제1항 관련)

연월일	출입시간 및 퇴거시간	용 무	출 입 자		입 회 자			비 고
			주 소	성 명	직 급	성 명	서 명	

210㎜ × 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열람청구서(제14조제1항 관련)

<table>
<tr><td colspan="5">열 람 청 구 서 (처리기간 : 5일 이내)</td></tr>
<tr><td rowspan="3">① 청 구 인</td><td>성 명</td><td></td><td>전 화 번 호</td><td></td></tr>
<tr><td>생년월일</td><td></td><td>정보주체와의관계</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② 정보주체의 인적사항</td><td>성 명</td><td></td><td>전 화 번 호</td><td></td></tr>
<tr><td>생년월일</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③ 열람내역</td><td>파 일 명 칭</td><td colspan="3"></td></tr>
<tr><td>파일기록항목</td><td colspan="3">전부, 일부( )</td></tr>
<tr><td colspan="2">④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td><td colspan="3"></td></tr>
</table>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열람결정통지서(제14조제2항 관련)

열람결정통지서

○○○ 귀하

주 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 수 연 월 일	
④ 열 람 할 내 용	
⑤ 열 람 일 시	
⑥ 열 람 장 소	
⑦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6호서식]

열람제한결정서(제14조제3항 관련)

열람제한결정서

○ ○ ○ 귀하

주 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 수 연 월 일				
④ 열람제한내용 (전부, 일부)				
⑤ 열람제한사유				
⑥ 담 당 자	소속		직 급	
	성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열람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열람제한결정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7호서식]

열람연기통지서(제14조제2항 관련)

열람연기통지서

○ ○ ○ 귀하

주 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 수 연 월 일				
④ 당초열람기간				
⑤ 열람연기사유				
⑥ 열람예정일시				
⑦ 담 당 자	소속		직 급	
	성명		전화번호	
⑧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열람기한이 연기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8호서식]

정정·삭제 청구서(제14조제1항 관련)

<table>
<tr><td colspan="6">정 정 (삭 제)청 구 서
처리기간 :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td></tr>
<tr><td rowspan="3">① 청 구 인</td><td>성 명</td><td></td><td>전 화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생년월일</td><td></td><td>정보주체와의 관계</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② 정보주체의 인적사항</td><td>성 명</td><td></td><td>전 화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생년월일</td><td colspan="4"></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③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td><td>파 일 명 칭</td><td colspan="2"></td><td>열 람 일</td><td>년 월 일</td></tr>
<tr><td>정정(삭제)할 항 목</td><td colspan="4">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td></tr>
<tr><td></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④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td></tr>
</table>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제14조제2항 관련)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 ○ ○ 귀하

주 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 수 연 월 일				
④ 정정(삭제) 결정내용				
⑤ 담 당 자	소속		직 급	
	성명		전화번호	
⑥ 그 밖의 안내사항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0호서식]

정정·삭제연기통지서(제14조제2항 관련)

정정(삭제)연기통지서

○○○ 귀하

주 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 수 연 월 일				
④ 당초정정(삭제)기간				
⑤ 정정(삭제) 연기사유				
⑥ 정정(삭제)예정기간				
⑦ 담 당 자	소속		직 급	
	성명		전화번호	
⑧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정정(삭제) 기한이 연기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1호서식]

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제14조제3항 관련)

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

○ ○ ○ 귀하

주 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 수 연 월 일				
④ 정정(삭제)거부내용	전부, 일부( )			
⑤ 정정(삭제)거부사유				
⑥ 담 당 공 무 원	소속		직 급	
	성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 내 사 항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거부처분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및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2호서식] (제14조제1항 관련)

위 임 장

① 위임받는자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② 위임자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정정·삭제)청구를 위임함.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210mm×148mm (신문용지 54g/㎡)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758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5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0.06.25~07.09(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우리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검암신명2차, 검암신명4차, 검암풍림2차, 검암풍림3차, 경서가이아, 경서태평, 당하금강, 당하대우, 당하풍림1차, 당하풍림2차, 당하풍림3차, 마전대원1차, 마전대원2차, 마전대주, 마전풍림3차, 불로대림, 왕길검단풍림, 왕길신명, 원당금호, 원당대림, 원당동문, 원당신안, 원당엘지, 원당풍림아파트 게시판
4. **공고대상** : 2010.04.01~05.31.접수자 중 최초분양계약자(매도자)단독신청 "붙임참조"(34명)
5. **공고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계약서상 매수자 본인 신분증· 통장· 도장, 특약 있는 계약서 또는 영수증)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시고, (공고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 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032-560-4757,47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자 명단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2010년 4월, 5월 매도자명단

연번	건물명칭	동	호	납부자	비 고
1	검암풍림2차	207	901	류윤현	2010년 4월 신청자
2	당하금강	111	1405	이영례	2010년 4월 신청자
3	당하금강	112	1203	신승철	2010년 4월 신청자
4	당하대우	102	502	김덕은	2010년 4월 신청자
5	당하대우	105	201	윤모원	2010년 4월 신청자
6	당하대우	111	1402	윤선자	2010년 4월 신청자
7	당하풍림2차	203	302	강도현	2010년 4월 신청자
8	마전대원1차	101	503	김지연	2010년 4월 신청자
9	마전대원2차	204	102	박영란	2010년 4월 신청자
10	마전대주	103	1405	모 영	2010년 4월 신청자
11	왕길신명	101	703	전미숙	2010년 4월 신청자
12	원당금호	106	103	김영상	2010년 4월 신청자
13	원당금호	106	104	김영상	2010년 4월 신청자
14	원당동문	106	1302	조준호	2010년 4월 신청자
15	원당풍림	207	1501	전점숙	2010년 4월 신청자
16	검암신명2차	201	402	이민숙	2010년 5월 신청자
17	검암풍림2차	210	303	서대선	2010년 5월 신청자
18	원당대림	101	201	박신영	2010년 5월 신청자
19	원당대림	102	701	강 숙	2010년 5월 신청자
20	원당대림	106	1401	지재현	2010년 5월 신청자
21	원당풍림	102	104	황은선	2010년 5월 신청자
22	원당풍림	104	1201	박미옥	2010년 5월 신청자
23	원당풍림	105	804	김은중	2010년 5월 신청자
24	원당풍림	205	1104	김경숙	2010년 5월 신청자
25	원당풍림	208	505	김경숙	2010년 5월 신청자
26	원당신안	107	1305	오원석	2010년 5월 신청자
27	당하대우	102	1404	김은영	2010년 5월 신청자
28	당하대우	106	302	박순양	2010년 5월 신청자
29	당하대우	107	1901	임명순	2010년 5월 신청자
30	당하금강	111	1206	윤영신	2010년 5월 신청자
31	원당금호	106	1401	김영진	2010년 5월 신청자
32	마전대원1차	102	1303	조순희	2010년 5월 신청자
33	마전대원1차	104	905	김정규	2010년 5월 신청자
34	당하풍림1차	104	1103	장윤임	2010년 5월 신청자

[별지 제8호 서식]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신청서

(NO.)

권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H.P)		
	과세물건			
조 정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H.P)		
조정신청 사 유 ※ 신청인이 환급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할 것)				
조정신청 대상자 및 증빙서류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중 ② **부담금 계약사실** 또는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영수증 원본, 사본, 금융거래내역 등)**의 제출이 가능한 자		

위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 신청 접수증

(NO.)

조 정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H.P)		
	과세물건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벌칙)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의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